

2023년 7월 18일

Preview

법적 기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과거에 없던 기준이 새롭게 생기는가 하면
기존의 기준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변해가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 뉴스레터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 등장에 따른 유연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과
'기존의 관행 및 판단 기준을 뒤바꾼 사례'를 법률전문가 기고 및
승소사례를 통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리걸 이슈 Legal Issues

'결제'는 자동으로 해지는 어렵고 : 다크패턴 규제와 소송'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민후 소식 Minwho News

'개정 특허법 신설규정인 특허권 이전등록청구권 주장하여 승소'

'유명 인터넷 은행을 대리한 특허 등록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리걸이슈

결제 는 자동 으로 해 지 는 어 렵 고 : 다크패턴 규제 와 소송

지난달 21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초거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수백만명 소비자를 속여 아마존프라임 서비스에 반복 가입하도록 기망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 구독 해지 노력을 방해했다며, 이른바 다크패턴을 이유로 시애틀 법원에 아마존을 고발했다.

한편, FTC는 다이렉트 마케팅 회사인 클리어링 하우스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숨겨진 수수료를 청구하고 데이터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오도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했었고, 지난달 1850만 달러(약 24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수백만명의 유저를 기망하여 의도하지 않은 게임 내 구매를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된 게임회사인 에픽은 2022년 12월 5억 2000만 달러(약 6700억원)를 지불하기로 FTC와 합의한 적도 있다.



김경환 대표 변호사
T. 02-532-3425
E. oalmephaga@minwho.kr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있었는데, 이벤트 화면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을 화면의 제일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명확하게 인지·확인할 수 없게 했던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던 대법원 2016년 6월 28일 선고 2014두2638 판결 사안을 들 수 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디지털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입과 해지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적도 있다.

다크패턴은 눈속임 설계라고 하는데, 일종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 사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商術)'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다크패턴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비록 다크패턴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있지만,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비대면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정부당국은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 법(2022. 7.), 미국의 다크패턴 금지 법안(2021. 12.) 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2023. 4. 21. 다크패턴 정책방향), 방송통신위원회(2023. 2. 3. 2023년도 업무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3. 6. 28. 기본계획) 등에서 다크패턴에 대한 정책과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크패턴 규제의 원리는 간단한 바, 결국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금전과 개인정보를 취함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공정위는 다크패턴에 대하여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으로 행위 태양을 구분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는 마케팅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유도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관행이 있는바, 정당한 마케팅 기술과 부당한 다크패턴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첫 화면에 팔고자 하는 상품 중 최저가격 상품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는 데, 이런 행위까지 다크패턴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약 97%의 모바일 앱에서 다크패턴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해지 페이지를 찾지 못해 해지를 내일로 미루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크패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제재는 필요하되, 적절한 선을 확정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리걸이슈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미국의 AI 개발자 Stephen Thaler 교수는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통상의 출원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발명이 인공지능 ‘DABUS(다부스)’를 통해 생성된 것이라는 점과, 다른 아닌 다부스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출원 되었다는 점이다.

출원서를 접수한 16개국에서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하는 발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일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기는 하였으나(호주 연방 제1심법원 판결.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발명자는 자연인(natural persons)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고, 유럽특허청,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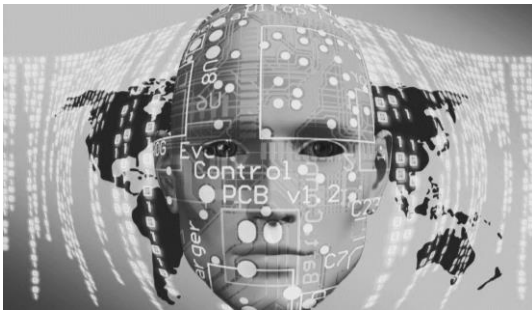
원준성 파트너 변호사
T. 02-538-3427
E. wonjs@minwho.kr

위 16개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허청 역시 2022. 9. 28.경 자연인이 아닌 자를 발명자로 기재한 것은 방식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Stephen Thaler 교수의 특허출원이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Stephen Thaler 교수는 그 무효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3. 6. 30.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524 판결).

그 판결의 요지를 살펴본다. 대상판결의 결론부터 말하면 특허청의 처분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방식위반으로 무효에 해당 한다고 본 특허청의 견해가 옳다고 서울행정법원은 판단하였다.

그 주된 근거는 ① 우리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3조 참조), 발명자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자연인 아닌 AI는 이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② 다부스가 ‘강한 인공지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③ 특허법은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원시적으로 귀속 시키고 있으므로 발명자는 권리능력을 가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인공지능은 권리능력이 없는 점, ④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사회의 기술 및 산업발전 도모에 공극적 기여가 되는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요컨대 현행법상 발명자는 권리능력 있는 자연인으로 해석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납득할만한 내용이다. 특허법을 비롯한 현행법들은 인공지능의 창작행위나 생성행위를 예견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행 특허법을 판단기준으로 두고 특허청의 무효처분이 특허법 위반인지를 판단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사람’에 인공지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을 전제로 한 현재 시점의 해석일 뿐이라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발전은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용도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그에 발맞춘 법제도 정비도 가속화 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인공지능 규제법안(the AI Act) 도입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고,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의 기존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여러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가 배포되는 등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롭게 정립되는 법제도 아래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발명은 특허권이든 혹은 다른 어떤 명칭의 권리가든 간에 유효하게 제도권 내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을 통한 발명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가온 현실이기 때문이다. 재산상 가치가 있는 발명이 현재 생성되고 있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임은 분명한데, 그 법적관계를 모호한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기존의 개별적 제도 내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관한 논의 등 일반 법리 수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순간이라 하겠다.

*강한 인공지능 : 인간이 개발하거나 제공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민후 소식

개정 특허법 신설규정인 특허권 이전등록청구권 주장하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 모인출원 행위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로, 무권리자인 피고의 모인출원 행위와 권리 주장으로 곤란을 겪게 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특허법의 개정으로 모인출원 된 특허권을 정당한 권리가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특허법 제99조의2), 대다수의 사례는 “앞선 특허의 무효 및 새로운 특허의 출원”이라는 기존의 번잡한 절차를 이용하고 있었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법원의 판례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이자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과 피고가 특허법상 권리를 가질 수 없는 무권리자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음은 물론, 아울러 새로 도입된 이전등록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를 모두 갖추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설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권 제도에 따라 피고가 보유한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민후 소식

유명 인터넷 은행을 대리한 특허 등록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인터넷 은행을 대리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유명 인터넷 은행 기업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인 원고로부터 특허권침해 민사소송으로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민사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의 결합 등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특허권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유사한 취지의 민사소송을 반복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법리를 검토하여 원고 특허발명에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의뢰인에게 등록무효심판을 제안하여 등록무효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허심판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을 하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불복한바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기되었는데,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특허발명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들의 결합 등을 통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기술적·법리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